

1. 재무설계 원론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87	표	신용카드 미결제액 , 신용카드 미결제액 ,	신용카드 미결제액 , 신용카드 미결제액 ,	오타수정
114	표	비상자금지표	비상 예비 자금지표	문구삽입
114	표	총부채부담지표 총부채 잔액/ 총소득 ^{주)}	총부채부담지표 총부채 잔액/ 총자산	공식수정
114	표	거주주택마련 부채부담지표 거주주택 마련 부채 잔액/ 총소득 ^{주)}	거주주택마련 부채부담지표 거주주택 마련 부채 잔액/ 총자산	오타수정
118	상11	현금성자산(보통예금 제외)+저축성 자산 (중신보험 포함) = 5,440만원	현금성자산(보통예금 제외)+저축성 자산 = 5,440만원	문구삭제
121	표	총부채상환지표 보장성보험료 /총소득 ^{주)}	총부채상환지표 총부채상환액 /총소득 ^{주)}	공식수정
121	표	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 총부채상환액 /총소득 ^{주)}	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 소비생활부채상환액 /총소득 ^{주)}	공식수정
121	표	거주주택마련부채상환지표 소비생활부채상환액 /총소득 ^{주)}	거주주택마련부채상환지표 거주주택 마련 부채상환액 /총소득 ^{주)}	공식수정
121	표	총부채부담지표 거주주택 마련 부채상환액 /총소득 ^{주)}	총부채부담지표 총부채/총자산	공식수정
121	표	거주주택마련 부채부담지표 총부채 잔액 /총소득 ^{주)}	거주주택마련 부채부담지표 거주주택 마련 부채/총자산	공식수정
164	예제	[예제15] 윤씨는 ... 매년 말 1,000원 씩 적립하기로 하였다.	[예제15] 윤씨는 ... 매년 말 1,000만 원 씩 적립하기로 하였다.	금액수정
177	하3	-100[PV], 12[n], 12 [i],	-100[PV], 12[n], 7/12 [i],	오타수정
181	하1	2,280[PV], 20[n], 2[i], FV = 3,388.96	2,280[PV], 20[n], 2[i], FV = 3,387.96	오타수정
191	상7	200, 00 ,000[PV],	200, 000 ,000[PV],	오타수정

2.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0	하7	근거하여 계약자의 조기사망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문구수정
41	하2	나누면 상해위험을 위해	나누면 소득상실위험을 위해	문구수정
52	박스	경년감가율(1년) × 재조달가액(100%)- 최종잔가율/추정내용연수	경년감가율(1년) = 재조달가액(100%)- 최종잔가율/추정내용연수	부호수정
84	하8	장례비를 300 만원으로 하고 있다.	장례비를 500 만원으로 하고 있다.	금액수정
121	표	피보험기간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표수정
169	상10	보상대상 의료비는 100 만원이 된다.	보상대상 의료비는 90 만원이 된다.	금액수정
169	중앙	[A계약] 1,000,000 원×800,000원/ (800,000원+900,000원)= 470,588 원 [B계약] 1,000,000 원×900,000원/ (900,000원+800,000원)= 529,412 원	[A계약] 900,000 원×800,000원/ (800,000원+900,000원)= 423,530 원 [B계약] 900,000 원×900,000원/ (900,000 원+800,000 원)= 476,470 원	계산수정
177	상1 ~하1	장기간병보험은 보험사고 ... 경과하 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1~3 등급 판정시	장기간병보험 상품 중 장기요양등급 1 ~3 등급 판정시	문구수정
216	하1	각각 [표 3-38], [표 3-39]와 같다	각각 [표 3-36], [표 3-37]과 같다.	번호수정
220	표	표 3-37. 항공보험 의무규정 표 3-38. 항공기 관련 위험	표 3-38. 항공보험 의무규정 표 3-39. 항공기 관련 위험	번호수정
221	표	표 3-39. 대상재해별 보상하는 손해	표 3-37. 대상재해별 보상하는 손해	번호수정
221	상1	홍수해재난 동안의 ... 보상하지 아 니한다.	표 3-37과 좌측 문구는 217p 상1로 이동	편집수정
229	표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정액 지급한다.	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가 운전 중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 여 구속이 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경우 보장하며 가입금액	표수정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242	하5	1억원×(80%-20%)=6,000만원이	1억원×80%=8,000만원이	계산수정
243	하4	대물보상 1,000만원까지는 가입강제 보험이다. 대물 1,000만원을	대물보상 2,000만원까지는 가입강제 보험이다. 대물 2,000만원을	금액수정
307	상7	결혼시기를 29세로 예상하고	결혼시기를 30세로 예상하고	나이수정
323	하단 공식	$(P-CVP)(1+i)-(CV+D)/(DB-CV) \times 0.0001$ i: 재무설계사	$(P+CVP)(1+i)-(CV+D)/(DB-CV) \times 0.0001$ i: 이자율	공식수정 주석수정
324	상5	단위 보험금액당 코스트 = $(2,200,000,000+52,000,000)(1+0.05)-(54,000,000-1,200,000)/$ $(200,000,000-54,000,000) \times 0.00001$	단위 보험금액당 코스트 = $(2,200,000+52,000,000)(1+0.05)-$ $(54,000,000+1,200,000)/(200,000,000$ $-54,000,000) \times 0.00001$	계산수정
353	상7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또는 ... 이를 소급보험이라고 한다.	삭제	문구삭제

3. 투자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12	하7	연평균수익률= $(16,601-10,000)/$ $10,000 \div 5 = 0.06601 = 6.60\%$	연평균수익률= $(16,601-10,000)/$ $10,000 \div 10 = 0.06601 = 6.60\%$	오타수정
224	상9	$100,000,000 - 3,809,589 = 97,882,514$ 원	$100,000,000 - 2,117,486 =$ $97,882,514$ 원	금액수정
406	하1	과소평가 되었을 때 매도하는	과소평가 되었을 때 매수하는	오타수정
420	상8	독립성과 투자가능성을 가져야	독립성과 분산가능성을 가져야	문구수정

4. 부동산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2	상2	② 목적의 설정·파악	① 목적의 설정·파악	번호수정
37	표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 3개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부분 연면적 330m ²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 3 개층 이하, 1 개동의 주택부분 연면적 660m ² 이하,	넓이수정
178	표	명도 책임	명도 책임	오타수정
196	하3	시중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보 다 4~5% 정도	시중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보 다 4~5%p 정도	문구수정
242	표	• 외관상, 기능상 만족도 높은 부가가치	• 외관상, 기능상 만족도 높음 • 높은 부가가치 창출	문구수정

5. 은퇴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00	상3	100,000,000[PV], 265,329,771[FV], i = 5.00	10[n], -100,000,000[PV], 265,329,771[FV], i = 5.00	부호수정 기간수정
100	상5	$X = \{265,329.771 - [(1.4859 \times 0.4) + (2.1911 \times 0.6)] \times 100,000\}$ $[3.2071 - [(1.4859 \times 0.4) + (2.1911 \times 0.6)]]$ $\times 100,000$	$X = \{265,329.771 - [(1.4859 \times 0.4) + (2.1911 \times 0.6)] \times 100,000\} /$ $\{3.2071 - [(1.4859 \times 0.4) + (2.1911 \times 0.6)]]$ $\times 100,000\}$	부호삽입 괄호수정
134	표	농지연금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농지연금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중신연금 의 경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표수정
147	상13	최저 29만원, 최고 449원).	최저 29만원, 최고 449만원).	오타수정
150	상12	- 종합소득금액이 연 1,848만원 이 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 억원 이하	문구수정

		- 과세표준 재산(부동산)이 6억원 이하일 것	- 직전연도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미만 - 직전연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연간 합이 1,680만원 미만	
156	상11	(2) 사업장가입자 김민철(38세, 근로자) 사례 • 생년월일: 1978년 1월 1일	(2) 사업장가입자 김민철(근로자) 사례 • 생년월일: 1973년 1월 1일	나이삭제 년도수정
157	상10	$B_{값} = 4,000,000 \times 1.0221 = 6,062,665.38$	$B_{값} = 4,000,000 \times 1.02^{21} = 6,062,665.38$	표기수정
170	하3		• 가입기간 중 소득대체율 상수는 1.325로 가정함	문구추가
171	상3	$FV = 96,228,610.92[PV]$	$FV = 96,228,610.92$	부호삭제
171	상5	소득대체율 상수: 1.325 = $[1.8+1.5+1.485+ \dots +1.23+1.215+(1.2 \times 9)]/30$	소득대체율 상수: 1.325	계산삭제
175	하4	• 조기노령연금 일시금 평가액: 182,949천원 → $[BEG], 7,000[PMT], 30[n], (1.03/1.02-1) \times 100[i], PV = 182,948.71$	• 조기노령연금 일시금 평가액: 212,088천원 → $[BEG], 7,000[PMT], 30[n], (1.03/1.02-1) \times 100[i], PV = 182,948.71 (60 \text{ 세 시점})$ → 182,948.71[PV], 5[n], 3[i], $FV = 212,087.69 (65 \text{ 세 시점})$	계산수정
181	하6	(인출에 한함)	(담보제공에 한함)	문구수정
219	상3	경우보다 32,243천원이 더 많다.	경우보다 34,243천원이 더 많다.	금액수정
219	표	32,243 4.93% 5.54% 0.76%p 1.37%p	34,243 5.00% 5.62% 0.83%p 1.45%p	표수정
220	하12	→ 0[CF0], 1,000[CF1];60, 0[CF2];40,	→ 0[CF0], 1,000[CF1];60, 0[CF2];39,	오타수정
220	하6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 4.93% → 0[CF0], 1,000[CF1];60, 0[CF2];40, -159,482.22[CF3], IRR = 0.6338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 5.0% → 0[CF0], 1,000[CF1];60, 0[CF2];39, -159,482.22[CF3], IRR = 1.2272	계산수정

		→ 100[PV], 12 [n], 0.6338 [i], FV = 104.93	→ 100[PV], 4 [n], 1.2272 [i], FV = 105.00	
220	하3	재투자하는 경우: 5.54% → 0[CF0], 1,000[CF1];60, 0[CF2]; 40 , -159,482.22[CF3], IRR = 0.6338 → 100[PV], 12 [n], 0.6338 [i], FV = 105.54	재투자하는 경우: 5.62% → 0[CF0], 1,000[CF1];60, 0[CF2]; 39 , -159,482.22[CF3], IRR = 1.3759 → 100[PV], 4 [n], 1.3759 [i], FV = 105.62	계산수정
222	표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자신감이 있다. - - 0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자신감이 있다. 0 - -	부호이동
253	표주석	주) 해당 ... 1억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만 ... 1.2억원 이상인 경우	주) 해당 ...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 1.2억원 초과인 경우	문구수정
258	상9	→ 10,000 [PV], 20 [n], 4[i], FV = 121,555.29	→ 100,000 [PV], 5 [n], 4[i], FV = 121,665.29	계산수정
258	표	71세(1년)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71세(1년)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	문구추가
263	상3	· 과세표준: 5,211,023원 = 14,567,803 (과세대상 연금)-6,356,780(연금소득공제)-3,000,000(종합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을 앞에서 계산한 14,577,803 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단위에서 금액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정하면 연금소득 공제 등 모두를 다시 수정해야 하므로 현재는 프로세스 위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개정시 수정 예정입니다.	
265	하1	[BEG], -4,000[PMT], 136,091.30[FV], 20[n], i = 4.921	[BEG], -4,000[PMT], 136,091.30[FV], 20[n], i = 4.82	오타수정
329	하3	→ 53,000×0.8[PMT], 25[n], 3[i],	→ 53,000×0.8[PMT], 25[n], 3[i],	%삭제
333	표	연간 은퇴소득 목표 24,000 12,000 6,000 20,000 12,000 6,000 3,000 20,000	연간 은퇴소득 목표 18,000 6,000 12,000 12,000 12,600 4,200 8,400 12,000	금액수정
334	하3	최장수 직전연도 연봉: 6,000천원	최장수 금년도 연봉: 6,000 천원	문구수정

338	상1	①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 124,637.39천원 • 환산급여: ... ÷16×12}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소득공제)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 4,157.20천원 $= [(32,395.12 \times 0.15) - 1,080] \times 1.1$ $= 3,779.27 \text{천원(퇴직소득세)} + 377.93 \text{(지방소득세)}$	①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퇴직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산출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4,157,200천원으로 가정한다.	계산수정
342	상11	→ [BEG], 141,945.26[FV], 180[n], (1.05/1.04-1)×100[i],	→ [BEG], 141,945.26[FV], 15[n], (1.05/1.03-1)×100[i],	계산수정
344	표	DB형 퇴직연금 조정 후 (5,500)	DB형 퇴직연금 조정 후 (5,000)	금액수정
346	상2	① 주식형자산의 투자비중(X): 55.60%	① 주식형자산의 투자비중(X): 59.64%	%수정
353	상6		※ 주택연금 신청시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월 연금은 기말급으로 가정함	주석추가
362	하9	제2투자기간 중 안정형으로	제2투자기간 중 중립형으로	문구수정
364	상2	- 주식형자산 비중(X) = [186,989.462-0.5× (16.9324+21.7193)×7,977.14]/ [26.8881-0.5×(16.9324+7,977.14)]× 8,004.75]	- 주식형자산 비중(X) = [186,989.462-0.5× (16.9324+21.7193)×7,977.14]/ [26.8881-0.5×(16.9324+21.7193)]× 7,977.14]	금액수정
379	하6	추가로 57,502천원은	추가로 48,520천원은	금액수정

6. 세금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46	하9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문구수정
61	표	•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중 사망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	문구수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소득	소득	
71	표	주택마련저축 96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300만원	표수정
75	상6	차등화된 한도 내에서 납입액 전액 을 소득공제 한다.	차등화된 한도 내에서 납입액 을 소득공제 한다.	문구수정
77	상2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구수정
77	상8	(연 납입액 120 만원 이하에 한함)	(연 납입액 240 만원 이하에 한함)	금액수정
95	상3	박물관, 미술관 ... 3년 거치 3년 분 할납부가 가능하다.	삭제	문구삭제
132	표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삭제	문구삭제
202	상1	사업소득금액 1,000 만원	사업소득금액 1,500 만원	금액수정
286	사례	[사례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해설) 양도일 현재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사례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해설)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문구수정

7. 상속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1	사례	손자 2013 년 12월 23일	손자 2011 년 12월 23일	년도수정
171	상7	중소기업: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	중소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금액수정
184	사례	(상속재산은 ... 주택은 2채이며,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평가	(상속재산은 ... 주택은 2채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2년 전에	문구수정

		액으로 30억원 정도이며, 상속개시 당시	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평가액으로 30억원 정도이며, 상속개시 당시	
203	상1	다.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사인증여 제외)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1항제 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 규정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사인증여 제외)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 규정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문구수정 문구삭제
221	표주석	주) 평가기준일 ... 가액에 10% 를	주) 평가기준일 ... 가액에 3% 를	%수정
222	상7	② 특수관계인이 ... 시가의 30%인 경우	② 특수관계인이 ... 시가의 30% 이 상인 경우	문구수정
224	하10	평가한다.	평가한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구추가
226	상9	①~③(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분)의	①~③(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의	문구수정
276	하6	모든 직계비속일로부터 최대 3천만원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최대 5천만원	문구수정
287	해설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30,000,000원 과세표준 170,000,000원 12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50,0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100,000,000원	해설수정
296	하3	금번 증여 후 ...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고 상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현금으로	금번 증여 후 ...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 상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문구수정
328	상10	• 배우자상속공제: $\min[①, ②] =$	• 배우자상속공제: $\min[①, ②] =$	계산수정

		1,892,965,714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1,500,000,000원+ 392,965,714원 = 1,892,965,714원	1,971,428,571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1,500,000,000원(유증)+[12억원(상 가)+5억원(보험금)-6억원(임대보증 금)]x3/7 = 1,971,428,571원 	
--	--	--	--	--

7. 사례집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4	문제9	9. 60,000천원의 ... 생각이지만 대출 후 대출이자 를 포함한	9. 60,000천원의 ... 생각이지만 대출 후 대출원리금 을 포함한	문구수정
17	해설	→ -1,000,000[CF0], 30,000[CF1];2, 45,000[CF2];2, 50,000[CF3] , 1,326,281.56[CF4], IRR = 8.5661	→ -1,000,000[CF0], 30,000[CF1];2, 45,000[CF2];2, 1,326,281.56[CF3], IRR = 8.5661	해설수정
38	하2	투자수익률 = 1.0009839 ×1.04-1 = 5.023%	투자수익률 = 1.009839 ×1.04-1 = 5.023%	오타수정
40	하5	경우보다 1.75%의 수익률	경우보다 1.75% p 의 수익률	단위수정
41	하2	(0.09×75%) 2 +(0.02×25%) 2 +2×0.09×	(0.09×75%) ² +(0.02×25%) ² +2×0.09×	표기수정
43	표주석	※ 무위험이자율: 3%,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15% ,	※ 무위험이자율: 3%,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10% ,	%수정
50	표	EPS 5,000 5,000 30,000	BPS 5,000 5,000 30,000	용어수정
69	하3	→ 0[CF0], 27,000[CF1], 29,700[CF2], 302,400[CF3], 8[i], NPV = 290,517.83 천원, IRR = 6.74%	→0[CF0], 27,000[CF1], 29,700[CF2], 302,400[CF3], 8[i], NPV = 290,517.83 → -300,000[CF0], 27,000[CF1], 29,700[CF2], 302,400[CF3], IRR=6.74%	계산추가
77	상9	132,311.06[PV], 10[n], 5 [i],	132,311.06[PV], 10[n], 7 [i],	오타수정
79	하4	세후금액은 127,453천원 (40,390 +17,063)으로	세후금액은 127,453천원 (110,390 +17,063)으로	금액수정

96	하4	약 9,714천원[2,076×(300,000×1.025 ¹⁸)]	약 9,714천원[2,076×(300,000×1.025 ¹⁸)/1억원]	공식수정
142	표	주식형펀드 자금용도 은퇴자금	주식형펀드 자금용도 삭제	문구삭제
145	하14	FV = 65,239.577.76	FV = 65,239.58	금액수정
145	하6	→ 217,465(월이자상환액)[PMT]	→ 217.465(월이자상환액)[PMT]	부호수정
146	문제2	② 부족한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정기예금으로 추가저축을	② 부족한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정기예금과 동일한 금리의 정기적금으로 추가저축을	답지수정
147	문제3	③ 631,607천원	③ 594,181천원	답지수정
148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자금: 200,000천원(중신보험 사망보험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명보험 필요 보장금액: 694,181천원(894,181.27-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자금: 300,000천원(중신보험 사망보험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명보험 필요 보장금액: 594,181천원(894,181.27-300,000) 	계산수정
151	문제7	① 포트폴리오의 세후투자수익률은 약 3.68%로	① 포트폴리오의 세후투자수익률은 약 3.34%로	%수정
152	표	MMF 세후투자수익률 2.0%	MMF 세후투자수익률 1.0%	%수정
152	표	MMF 가중평균수익률 0.68%	MMF 가중평균수익률 0.34%	%수정
152	표	가중평균수익률 계 3.68%	가중평균수익률 계 3.34%	%수정
153	문제8	④ 9,589원	④ 9,588원	답지수정
153	해설	10,000/(1+0.03%)×(1+0.03%×153/365) = 9,588.94	10,000/(1+0.03)×(1+0.03×153/365) = 9,588.94	부호삭제
174	상8	김동관(42세): 본인,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 66,000천원	김동관(42세): 본인, 대기업 과장으로 9년 근속 중, 연봉 66,000천원	문구삽입

176	표	기타유입 17,130 상장주식처분가액 17,130	기타유입 21,130 상장주식처분가액 21,130	금액수정
176	표	주1) 상장주식 매도금을 CMA에 예치함	주1) 상장주식 매도금 중 일부를 CMA에 예치함	주석수정
182	하6	→ 200,000[PV], -1,265.30[FV],	→ 200,000[PV], -1,265.30[PMT],	부호수정
195	문제13	13. 김동관씨의 ... 적절한 것은? (대출이율은 연 5.4% 월복리 가정)	13. 김동관씨의 ... 적절한 것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이율은 연 5.4% 월복리 가정)	문구삽입
199	하5	→ 490,000 [FV], 18[n], 5[i], PV = 206,098.24	→ 496,000 [FV], 18[n], 5[i], PV = 206,098.24	금액수정
207	주석	주) 2016년 ... 20,000 좌임	주) 2016년 ... 20,000,000 좌임	좌수수정
220	해설	① 현재 평가금액은 20,000 좌× 1,015.6원 = 20,312,000원 ② 적립한 ... 20,000 좌인	① 현재 평가금액은 20,000,000 좌× 1,015.6원/ 1,000 = 20,312,000원 ② 적립한 ... 20,000,000 좌인	해설수정
264	표	저축 및 투자 72,598 CMA 11,558	저축 및 투자 61,040 CMA 0	금액수정
314	문제1	③ 59,991 천원	③ 57,523 천원	답지수정
328	상9	→ 9,394.66[PV], 4[n], 5[i], FV = 40,492.18	→ 9,394.66[PV], 4[n], 5[i], FV = 11,419.27	계산수정
328	문1	• 추가로 확보해야 할 교육비(부족액): 28,450 천원(68,942.65- 40,492.18) [정답] ①	• 추가로 확보해야 할 교육비(부족액): 57,523 천원(68,942.65- 11,419.27) [정답] ③	계산수정 정답수정
332	문제9	세전단가: $11,592.74 \div \{(1+0.038)^3 \times (1+0.038 \times 164/365)\} = 10,191.58$ 원	세전단가: $11,592.74 \div \{(1+0.038)^3 \times (1+0.038 \times 164/366)\} = 10,192.04$ 원	계산수정
334	하5	$8,868 \times 1.055^{12} = 4,664.40$	$8,868 \div 1.055^{12} = 4,664.40$	부호수정
339	상5	채수민 독거기간: 부부 은퇴기간 이후 10 년	채수민 독거기간: 부부 은퇴기간 이후 5 년	기간수정

341	지문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없으며, 순영업수익(NOI)의 재투자수익률은 연 3.0%임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없음	문구수정
342	문제3	② 임야 주변지 개발이 계획되어 임야가치가 매년 7%씩 상승한다면 근린생활부동산을 ... 것보다 임야를 5년간 보유한 후 매각하는	② 임야 주변지 개발이 계획되어 임야가치가 매년 7%씩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근린생활부동산을 매입 후 5년차 말에 매각하는	답지수정
344	문제6	간병비 총은퇴일시금 ③ 57,265 2,152,178 ⑤ 57,265 2,346,433	간병비 총은퇴일시금 ③ 58,040 2,152,953 ⑤ 58,040 2,347,208	답지수정
347	해설	• 임대보증금 700,000천원	• 임대보증금 700,000천원 • 5차년도말 부동산 매각가액 → 2,000,000[PV], 5[n], 2[i], FV= 2,208,161.61	해설추가
347	표	부동산가액 -2,000,000 부대비용 80,000 보증금 -600,000 자기자본 1,520,000	부동산가액 -2,000,000 부대비용 -80,000 보증금 -600,000 자기자본 1,520,000	표수정
348	문3	② 임야의 시세상승이 확실하다면 임야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 • 5년 후 임야 매각 예상가: 2,805,103천원(2,000,000×1.075) - 매각 부대비용: 897,633천원(2,805,103×32%) - 순매각대금: 1,735,742천원 - 현재시점 평가액(할인률 4%): 1,567,801천원 • 근린생활부동산을 매입하여 5년간 운영 후 매각시 현재시점 평가액: 1,560,905천원 = 1,185,150(순매각액의 현재가)+495,755(5년간 운용수익 현재가합) -120,000(매입부대비용)	② 근린생활부동산을 매입하여 5년간 운영 후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 • 임야 현재시점 평가액: 1,567,801천원 - 5년 후 임야 매각 예상가: 2,805,103천원(2,000,000×1.075) - 매각 부대비용: 897,633천원(2,805,103×32%) - 순매각대금: 1,907,470천원(2,805,103-897,633) - 현재시점 평가액: 1,567,801천원 → 1,907,470[PV], 5[n], 4[i], PV = 1,567,801.30 • 근린생활부동산 현재시점 평가액: 1,600,906천원 = 1,185,151(순매각액의 현재가)	해설수정

		* 5년 후 순매각대금의 현가: 1,185,151천원($1,441,917 \div 1.04^5$)	가)+495,755(5년간 운용수익 현가 합) -80,000(매입부대비용) - 5년 후 순매각대금의 현가: 1,185,151천원($1,441,917 \div 1.04^5$) - 5년간 운용수익 현가 합: 495,755천원 → 107,160[CF₁], 109,303[CF₂], 111,490[CF₃], 113,719[CF₄], 115,993[CF₅], 4[i], NPV = 495,754.70	
350	상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시점에서의 일시금(현재물가기준): 52,406천원 → [CF₀], 0[CF₁];26, 12,000[CF₂];3, 0[CF₃];7, 12,000[CF₄];3, (1.04/1.03-1)×100[i], NPV = 52,405.98 • 은퇴시점에서의 일시금 평가금액(은퇴시점물가기준): 57,265천원 → 52,405.98[PV], 3[n], 3[i], FV = 57,26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시점에서의 일시금(현재물가기준): 53,114.61천원 → 0[CF₀], 0[CF₁];26, 12,000[CF₂];3, 0[CF₃];2, 12,000[CF₄];3, (1.04/1.03-1)×100[i], NPV = 53,114.61 • 은퇴시점에서의 일시금 평가금액(은퇴시점물가기준): 58,040천원 → 53,114.61[PV], 3[n], 3[i], FV = 58,039.77 	해설수정
350	문7	<p>① 은퇴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이 1,992,470천원이고, 은퇴시점에서 임야 매각대금은 1,519,200천원이므로 473,270천원이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1,992,470천원 = 총은퇴일시금(2,346,433천원)-채권형펀드 평가액(353,963천원) 	<p>① 은퇴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이 1,993,245천원이고, 은퇴시점에서 임야 매각대금은 1,519,200천원이므로 474,045천원이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1,993,245천원 = 총은퇴일시금(2,347,208천원)-채권형펀드 평가액(353,963천원) 	해설수정
351	상6	② 현재 ... 은퇴시점에서 평가액이 1,373,706천원 이므로 은퇴자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18,764천원 이	② 현재 ... 은퇴시점에서 평가액이 1,569,270천원 이므로 은퇴자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23,975천원 이	해설수정
351	하11	→ 1,395,075[PV], 3[n], 4[i], PV = 1,569,269.65	→ 1,395,075[PV], 3[n], 4[i], FV = 1,569,269.65	부호수정
351	하10	③ 은퇴시점에서 추가로 필요한 은	③ 은퇴시점에서 추가로 필요한 은	해설수정

		퇴일시금이 1,992,470 천원이고, 임야 매각대금 (1,569,270 천원) 및 은퇴시점에서 평가한 임대소득 (331,032천원)의 합계가 1,900,302 천원이므로	퇴일시금이 1,993,245 천원이고, 임야 매각대금 (1,519,200 천원) 및 은퇴시점에서 평가한 임대소득 (331,032천원)의 합계가 1,850,322 천원이므로	
351	하5	→ 294,285.98[PV], 3[n], 4[i], FV = 33,031.70	→ 294,285.98[PV], 3[n], 4[i], FV = 331,031.70	금액수정
351	하4	④ 은퇴시점에서 추가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이 1,992,470 천원이고 ... 은퇴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은퇴시점에서 추가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이 1,993,245 천원이고 ... 은퇴자산을 확보할 수 없다 .	해설수정
378	문제6	② 8,641 원	② 8,634 원	답지수정
387	상5	→ 48,181(72,000-3,170)[PMT],	→ 48,181((72,000-3,170)×70%)[PMT],	표기수정
390	문6	[해설] • 채권수익률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8,641 원 = 8,890원(현재의 채권가격)- 249 원(채권수익률 상승에 따른 가격변동폭) • 듀레이션(D): ... NPV = 28,313.18 - 수정듀레이션: 2.80(2.9121/1.04) • 채권가격 변동폭(ΔP) = ... -249 원	• 채권수익률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8,634 원 = 8,890원(현재의 채권가격)- 256 (채권수익률 상승에 따른 가격변동폭) • 수정듀레이션: 2.88(3/1.04) • 채권가격 변동률 = 2.88×1% = 채권가격 변동폭/채권가격 = 채권가격 변동폭/8,890 • 채권가격 변동폭 = 8,890×2.88% = 256 원 하락	해설수정
416	상11	→ 311,062.18[PMT], 25[n], 7.5/12[i], FV = 7,178,750.49	→ 311,062.18[PMT], 25[n], 7.5/12[i], PV = 7,178,750.49	표기수정
416	하7	→ [BEG], 18,000[PV], 500 [n],	→ [BEG], 18,000[PMT], 50 [n],	표기수정
416	하2	→ 125,735.35[FV], 2[n], 4[i], PV = 135,995.36 • 김연철 ... 512,887천원(648,882- 125,735)	→ 125,735.35[PV], 2[n], 4[i], FV = 135,995.36 • 김연철 ... 512,887천원(648,882- 135,995)	표기수정 금액수정